

『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상의 명칭을 “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” 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고 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 현재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